



문화체육관광부



수신 종교단체 대표
(경유)

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2.1.14.) 관련입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증,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감소, 중환자 병상여력 등 의료대응 체계와 감염취약 계층인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 제고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,
 -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어,
 -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<주요 조치 사항>

주요 내용	
사적모임 제한 ▲ (기존)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→(변경)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*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라면 6인까지, 종교시설 내에서(붙임 3, 67p참조)	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▲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▲ <u>방역패스 의무적용</u>

가. 적용기간: 2022.1.17.(월) ~ 2022.2.6.(일) 24시

나. 적용지역: 전국 17개 시·도*

- 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경과규정 등

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: 2022.2.7.(월) 05시까지 적용

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(연령) 확대*: 2022.3.1.(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* 계도기간: 2022.3.1.(화)~ 2022.3.31.(목)

* 적용기간,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3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 귀 종교단체에서는 방역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이용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 종교시설 등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2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3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주무관 김해강 행정사무관 차혜란 종무1담당관 전결 2022. 1. 17. 강성태
협조자 종무2담당관 윤양수
시행 종무1담당관-177 (2022. 1. 17.) 접수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층 / <http://mcst.go.kr>
전화번호 044-203-2328 팩스번호 044-203-3462 / mostovoi10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